|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| 보도참고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보도시점 2023. 12. 21.(목) 12:00 배포 2023. 12. 21.(목) 10:00

#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,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!

-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. -

□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. **연말정산**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**실제로 납부할 세금**을 **정산**하는 과정입니다.

○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**주요 일정**과 **개정 세법**, **절세 꿀팁**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

□ (**일정**) 「간소화 서비스」는 1.15.에 개통 예정이며, 「일괄제공 서비스」를 이용하는 **회사**는 1.14.까지 근로자 **명단**을 **등록**하고 1.20.부터 자료를 **내려 받아** 연말정산한 후 3.11.까지 **지급명세서**를 **제출**합니다.

○ **근로자**는 1.19.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**동의**하면 되고, **환급금**은 **4월 까지 지급**받을 수 있습니다. *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□ (**세법 개정**) 올해 연말정산부터 **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**도 미리 확인하여 **빠짐없이 공제** 받으시기 바랍니다.

| 확대되는 공제·감면 혜택 |

✓ (**신용카드**) **대중교통** 사용액의 공제율이 40%에서 **80%**로, **문화비·전통시장** 사용액 공제율도 4.1.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**40%·50%**로 10%p씩 상향

✓ (**연금계좌**)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에서 **600만 원 (900만 원)**으로 공제한도 확대

✓ (**자녀세액공제**) 조부모가 **손자·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** 적용 가능

✓ (**월세**) 공제대상 **주택 기준시가**가 3억 원에서 **4억 원**으로 상향

✓ (**교육비**) **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**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% 세액공제

✓ (**고향사랑기부금**) 기부금액 중 **10만 원까지 전액**, 500만 원까지 15% 공제

✓ (**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**)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**200만 원**으로 상향

□ (절세 꿀팁) **지난해 연말정산 결과**와 **문의가 많았던 내용**을 바탕으로 '**절세 꿀팁**'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,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
|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'공제 꿀팁' |

✓ **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.**

-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→ 현금영수증 → '주택임차료 거래'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**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**으로 활용할 수 있고,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**현금영수증 소득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중복 공제는 불가)

* 홈택스에서 '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'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

✓ **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**

-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·계약자가 아니라도,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%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

✓ **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.**

-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·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,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✓ **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.**

- '맞벌이 부부 절세안내'에서는 부모님·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,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.

* 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 > 편리한 연말정산 >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

□ 참고로, **지난해 연말정산 결과** 근로자 **10명 중 8명**이 **세금을 환급**받았고, **2명**은 **추가 납부**하였습니다.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.

○ 가장 많이 받은 **소득공제** 항목은 ①**신용카드** 등 소득공제 → ②**주택 저당 차입금** 이자상환액 → ③**주택 임차차입금** 원리금상환액 순이고,

○ **세액공제**는 ①**기부금** → ②보장성 **보험료** → ③**의료비** 순이며, **가장 높은 증가율**을 보인 항목은 **월세 세액공제**로 약 **62%**가 증가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소득금액 기준(1백만 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**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**을 안내(참고2)해 드리니,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**공제·감면 요건**을 **잘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개인·법인신고안내 > 연말정산 종합안내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법인납세국<br>원천세과 | 책임자 | 과 장 | 황동수 (044-204-334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전정영 (044-204-3347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김재산 (044-204-3342) |
| <협조> | 정보화관리관<br>홈택스2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이준목 (044-204-255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학식 (044-204-2572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1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□ 회사는 '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**모든 근로자**(퇴사자 포함, 일용근로자 제외)를 대상으로 **'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**까지 **연말정산**을 완료하고, '24.3.11.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간소화자료 「**일괄제공 서비스**」를 이용하는 회사는 1.14.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*의 간소화자료를 **1.20.부터 홈택스**에서 **일괄**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,

* 1.19.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(동의)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

○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**1.15. 개통**하는 **간소화서비스***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. 【참고 1】 주요 일정

* 고향사랑기부금, 영화관람료, 수능응시료·대입전형료,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

연말정산 일정

○ **맞벌이 부부 절세안내**는 1.18.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**이용 가능**하며, **환급세액**이 발생한 근로자는 **4월 까지 회사**에서 **지급**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·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.

○ 또한,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**과다공제 유형**을 **확인**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【참고 2】 주요 과다공제 유형

연말정산 주요 확인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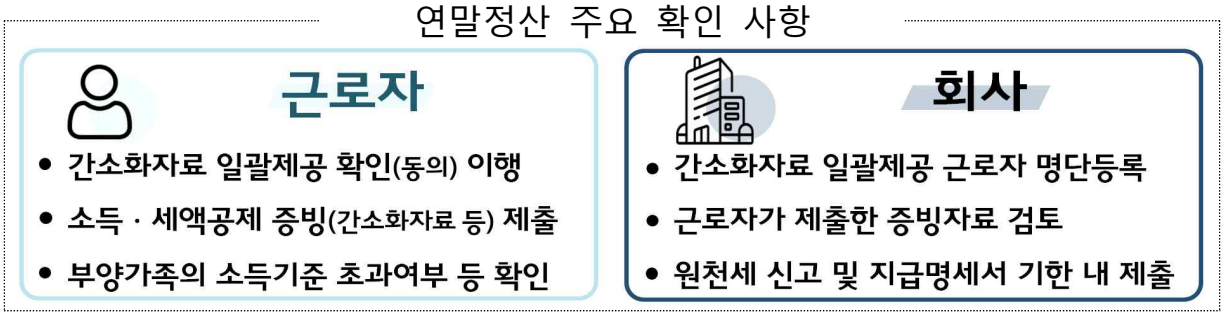

## 2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

###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

○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**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**와 **전통시장** 사용액, **대중교통비**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. 【참고 3】 계산사례

| 공제항목 | 종전 | | ’23년 |
|---|---|---|---|
| ① 대중교통비 | 40% | | 80%(1.1.~) |
| ② 전통시장 | 40% | ▶ | 50%(4.1.~) |
| ③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* | 30% | | 40%(4.1.~) |

*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, 영화관람료는 7.1.이후 지출분부터 포함

- 또한 ①, ②,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**3개 항목**을 **통합**하여 **300만 원*** **한도**를 **적용**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.

*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, ② 항목만 공제 가능 → 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

### 2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·손녀 추가

○ 조손가정의 경우 **손자·손녀에 대해**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, **자녀세액공제**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**확대**됩니다.

### 3 월세·교육비·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

○ **월세 세액공제** 대상 **주택**의 범위가 **기준시가 3억 원**에서 **4억 원 이하**로 확대되었습니다.

○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**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**의 15%를 **교육비**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**연금계좌 세액공제**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 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에서 **600만 원** (900만 원)으로 **확대**되었으며 **총급여 5,500만 원** 이하자는 납입액의 15%를, 초과자는 납입액의 12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## 4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

○ **고향사랑 기부금**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**110분의 100***, **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** 금액은 **15%**를 **세액공제**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

○ 소속 노동조합[1)]이 11.30.까지 **결산결과**를 **공시**하면 **'23.10 ~ 12월**[2)]에 납부한 **노동조합비**의 **15%** (1천만 원 초과 30%) **세액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·연합단체·단위노동조합·산하조직 모두 포함
2) '23.1월 ~ '23.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

##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·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

○ **청년 등**이 **중소기업**에 **취업**하는 경우 적용되는 **소득세 감면 한도**가 연 150만 원에서 **200만 원**으로 높아집니다.

○ **벤처기업**의 **스톡옵션*** **행사이익**에 대한 **비과세한도**가 연간 5천만 원에서 **2억 원**으로 **상향**(회사당 5억 원 한도)되었습니다.

*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

□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**'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**되므로 **이번 연말정산**에는 **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**'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** 【참고 4】

- **(신용카드)** '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(10%, 100만 원 한도)
- **(월세)**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(총급여 8천만 원, 연 1,000만 원)
- **(자녀세액공제)**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(15만 원→20만 원)
- **(기부금)** 3,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(30%→40%)
- **(의료비)**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 요건(7천만 원 이하) 폐지,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
- **(주택청약저축)**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(연 240만 원 → 300만 원)
- **(장기주택저당차입금)**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(5억 원 → 6억 원), 공제한도 상향 (300만 원 ~ 1,800만 원 → 600만 원 ~ 2,000만 원)

# 3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.

## 1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

○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**홈택스**를 통해 **현금영수증 발급***을 신청하면 **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**의 **'주택임차료 거래'**에 반영됩니다.

*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**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**접근경로**

홈택스(PC)·손택스(모바일) >> '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' 검색

○ ①**월세 세액공제*** **대상자**는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, ②**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**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**신용카드 등 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**(요건)**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&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
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

## 2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

○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**세대주**와 **월세**를 **나누어 부담**하는 경우, **각각 부담한 금액**에 대해 **세액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세대주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등은 제외

**사례 ❶**

사회초년생 A는 **회사 인근 오피스텔**에서 **직장동료 B**와 함께 거주하며 **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**하고 있으나, 공제요건인 세대주·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였음

☞ **세대주**인 B와 **별도생계**를 유지하므로 **A**도 실제 **부담한 월세**에 대해 **공제 가능**

* (증빙서류)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

##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% 활용하기

▪ 「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」

▸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(청년 5년)간 소득세의 70%(청년 90%)를 감면(연 200만원 한도)

* (감면안내 책자)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신고안내 > 개인신고안내 > 연말정산 > 주요정보

○ (**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**)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**감면**받은 후 **결혼·출산**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**재취업**하여 **경력단절여성** 요건을 충족하면 **3년간 더 감면** 받을 수 있으므로,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–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% 감면받고,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%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.

**사례 ❷**

33세 여성근로자 C가 '18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◇◇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간 **청년근로자**로 **90% 감면**을 받은 후 **출산사유**로 **퇴직**하였음. 이후 '23년 ◇◇기업과 **동일업종**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□□중소기업에 **재취업**한 경우

☞ '청년'과 '경력단절여성'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**경력단절여성**으로 **감면 적용 가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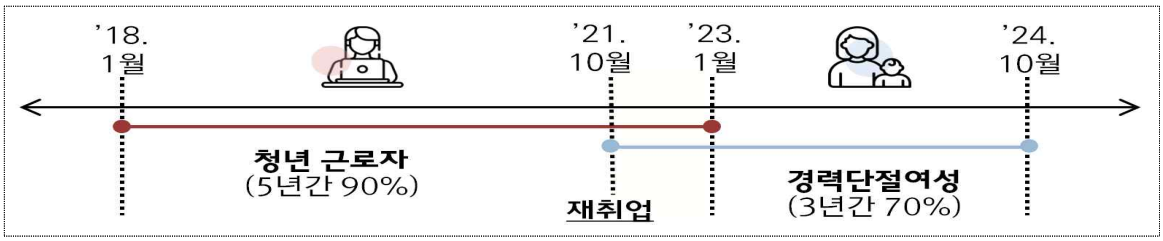


○ (**이직한 근로자**)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**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**받을 수 있습니다.

**사례 ❸**

청년근로자 D는 □□중소기업에 5년간('18~'22) 근무하다 '23년 ○○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, □□중소기업 근무 시 **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음**

☞ **중소기업 취업일*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, 재취업한 ○○중소기업에 감면신청**을 하면 '23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

*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

○ (**비영리법인 근로자 등**)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*을 영위하는 **비영리법인**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**아파트 관리사무소**와 **사회복지 시설**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(보건업, 전문서비스업 등 제외)

**사례 ❹**

은퇴 후 **아파트 관리사무소**에 재취업한 63세 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

☞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**감면 대상업종**에 **해당**하므로 **감면 가능**

○ (**회사가 폐업한 경우**)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**근로자**가 **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**하여 **감면**받을 수 있습니다.

## 4 공제율이 높은 '21·'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

○ **'21·'22년**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**5%p 상향**되어 20%(1천만원 초과 35%)가 적용되었고 '23년부터는 15%(30%)가 적용되므로, '21·'22년 **한도 초과액**이 있는 경우 **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**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
**사례 ❺**

근로자 F는 '21·'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,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. F는 '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,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함

☞ 먼저 **'21·'22년** 각각 **한도초과액 100만원**에 대해 **20% 공제율**로 공제받고, **'23년 지출분** 500만원 중 200만원*에 대해 **15% 공제** * 한도 Min(400만원 -200만원, 500만원)

## 5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

○ 「편리한 연말정산*」에서는 **맞벌이 부부**가 부모님·자녀 등 **부양가족 공제**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**최적의 공제조합**을 보여 드립니다.

* 공제신고서 작성,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

- 통상 **급여가 많은 근로자**가 **공제**받는 것이 **유리**하나 의료비·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,
- **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**까지 **반영**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, **세금부담**을 **최소화**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*사례 ⑥**

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 2천만원,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, **부양가족**은 자녀 3명과 부모님·배우자의 부모님 총 **7명**임

☞ '절세안내 보기'를 통해 부양가족 **선택**이 **가능**한 **128가지 경우**에 대한 **세금 증감액**을 **확인**한 결과,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하였음

절세안내 보기 결과

부양가족 목록조회

엑셀다운로드

[본인의 공제신고서 최종변경일자(2023 ) /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최종변경일자(2023 )]

| | 본인( A ) | 배우자( B ) |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 | 배우자 결정세액 증감액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례 1 | 공 ,김 ,심 ,송 ,민 | 어 ,한 | -2,261,460 | 1,386,748 | -874,712 |
| | ... | | | | |
| 사례 22 | 공 ,심 ,어 ,송 ,민 | 김 ,한 | -1,386,760 | 1,103,310 | -283,450 |
| | ... | | | | |
| 사례 37 | 공 ,김 ,어 ,심 | 민 ,송 ,한 | 0 | 0 | 0 |
| | ... | | | | |
| 사례 128 | 어 | 공 ,김 ,심 ,송 ,민 ,한 | 2,625,000 | -1,125,000 | 1,500,000 |

* 사례 37 : 근로자·배우자가 당초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에 따른 공제세액

○ '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'는 1.18.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. 【참고 6】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

– 형제·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

| 선행 절차 | | Step.01 | | Step.02 |
|---|---|---|---|---|
| ① 연말정산간소화 선택<br>② 공제신고서 작성<br>③ 예상세액 계산하기 | ⇨ | 자료제공 동의하기<br>(상대방 배우자에게) | ⇨ | 절세안내 보기<br>(시뮬레이션 결과제공) |

* (접근경로) 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 > 편리한 연말정산 >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

# 《 참 고 자 료 》

## 공제·감면 관련 세법안내

1. 연말정산 주요 일정 ····· 12

2.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····· 13

3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 ····· 14

4. '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····· 15

## 연말정산 도움자료

5. 연말정산 종합안내 ····· 16

6.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····· 17

7. 주요 문답자료(FAQ) ····· 18

| 참고 1 | 연말정산 주요 일정 |
|---|---|

| 업 무 내 용 | 일 정 |
|---|---|
| ·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<br>* 기업 실무자·근로소득자용 안내 동영상, 자주묻는질문, 계산사례 등 누리집 등재 | 12월 중순~ |
| ·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| '24. 1. 3. |
| ·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| 1. 14. |
| ·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| 1. 15. |
| ·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| 1. 15.~1. 17. |
| ·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<br>* 공제신고서 작성 및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| 1. 18. |
| ·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| 1. 19. |
| ·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| 1. 20. |
| ·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<br>*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| 1. 20.~3. 11. |
| ·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| 1월 말(예정) |
| · 기타·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| 2. 29. |
| ·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·납부기한<br>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| 3. 11. |

| 참고 2 |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|
|---|---|

| 항목 | 과다공제 사례 |
|---|---|
|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| ○ 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백만 원*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<br>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|
|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| ○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<br>○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|
|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| ○ '23.1.1.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|
| ④ 교육비·의료비 등 중복공제 | ○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|
|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| ○ 유주택자*임에도 주택자금(월세액 공제 포함) 공제<br>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|
| ⑥ 교육비 과다공제 | ○ 자녀,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<br>○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(비과세)을 지원받거나,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|
| ⑦ 의료비 과다공제 | ○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<br>○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「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」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|
| ⑧ 기부금 과다공제 | ○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·고향사랑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<br>○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'23.10.1.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|
| ⑨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| ○ 감면대상 업종*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<br>* 제외업종(예시):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, 금융·보험업, 교육서비스업 등<br>○ 대표자의 배우자·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 |

* ①~③의 경우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(기본공제 + 추가공제) 뿐만 아니라,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(보험료, 교육비, 신용카드, 기부금 등) 또한 배제

| 참고 3 |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사례 |
|---|---|

▪ **총급여 7천만 원**인 근로자가 '23년에 **3,480만 원**(**전통시장 450만 원, 도서·영화 관람료 등 330만 원, 대중교통 200만 원** 포함)을 사용한 경우

☞ **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**은 추가공제 300만 원을 포함하여 **총 600만 원**입니다.

▪ **[신용카드 등 사용현황]**

(만원)

| 사용연도 | 신용카드 |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 | | 전통시장 사용액 | | 교통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1~3월 | 4~12월 | 1~3월 | 4~12월 | |
| 2023년 | 2,500 | 100 | 230* | 150 | 300 | 200 |

* 7.1. 이후 영화관람료 지출분 30만원 포함

▪ **[신용카드 등 공제금액]**

▸ **소득공제 금액** : **600만 원** (① + ②)

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: **300만 원**[2)]

(2,500만 원 – 1,750만 원[1)]) × 15% + (100만 원 × 30% + 230만 원 × 40%)

(1) 일반 신용카드 (2) 도서·영화 등

+ (150만 원 × 40% + 300만 원 × 50%) + 200만 원 × 80% = 604.5만 원

(3) 전통시장 (4) 대중교통

1) 최저사용금액 = 총급여(7천만 원) × 25% 2)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(300만 원)

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: **300만 원**

* Min [ 한도초과액(604.5만 원 - 300만 원), (2) + (3) + (4), 300만 원(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추가한도)]

= Min [ 304.5만 원, 492만 원, 300만 원] = 300만 원

※ **세법개정 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** : **547만 원** ( ① + ② )

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: **300만 원** (기본한도)

(2,530만 원* – 1,750만 원) × 15% + (300만 원 × 30%) + (450만 원 × 40%) + (200만 원 × 80%)

(1) 일반 신용카드 (2) 도서·영화 등 (3) 전통시장 (4) 대중교통

* 영화관람료 30만 원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

② **추가한도 적용**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: **247만 원**

* Min [ 한도초과액(547만 원 - 300만 원), (2) 180만 원, 100만 원] + Min [ 한도초과액(547만 원 - 300만 원 - 100만 원), (3)90만 원, 100만 원] + Min [한도초과액(547만 원 - 300만 원 - 100만 원 - 90만 원), 160만 원, 100만 원] = 247만 원

| 참고 4 | ’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<br>※ (유의)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|
|---|---|

① ’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(조특법 §126의2)

- ’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’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%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%를 추가공제(100만 원 한도)

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(소법§52의⑤⑥)

-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및 기준시가 요건 완화

**현 행**

| 상환기간 15년 이상 | | | 상환기간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고정금리 + 비거치식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기타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
| 1,800만 원 | 1,500만 원 | 500만 원 | 300만 원 |

• (주택요건) 기준시가 5억 원 이하

⇨

**개 정 안**

| 상환기간 15년 이상 | | | 상환기간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고정금리 + 비거치식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기타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
| **2,000만 원** | **1,800만 원** | **800만 원** | **600만 원** |

• 기준시가 6억 원 이하

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(조특법 §87)

- 납입한도액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(납입액의 40% 소득공제)

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강화 및 공제대상 확대 (소법 §59의4②, 소령 §118의5①)

-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
-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
-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* 의료비 공제 대상 추가

  * 「장애인활동 지원법」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등 서비스

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(소법 §59의4 )

- ’24.12.31.까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 40% 공제율 적용

⑥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(소법 §59의2)

- 둘째이상 자녀(손자녀 포함)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

  * (첫째/둘째/셋째 이상) (현행) 15/15/30만 원 → 15/20/30만 원

⑦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(조특법 §95조의2)

  * 소득기준 (현행) 총급여 7천만 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)
  → (개정) 총급여 8천만 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)
  한도액 (현행) 연 월세액 750만 원 → (개정) 연 월세액 1천만 원

# 참고 5 연말정산 종합안내

《접근 경로》

-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개인·법인 신고안내 > 연말정산
- 국세상담센터 누리집(call.nts.go.kr) > 세법 상담정보 > 연말정산

## 국세청 누리집

### ① 키워드 연말정산

목차 : 목차의 검색어를 클릭하면 설명 화면으로 이동

| no | 검색어 | no | 검색어 | no | 검색어 | no | 검색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간이세 | 26 | 단체보장성보험 | 51 | 연금보험료(공적연금) | 76 | 주택임차차입금 |
| 2 | 간소화서비스 | 27 | 땅별이분분철세 | 52 | 연금소득연말정산 | 77 |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|
| 3 | 간편계산(편리한 연말정산) | 28 | 모바일서비스 | 53 | 외국납부세액 | 78 | 중도퇴사 |
| 4 | 개인연금저축 | 29 | 반기별납부 | 54 | 외국인근로자 | 79 | 중소기업취업자(청년 경력단절여성등) |
| 5 | 건강보험료 | 30 | 배우자 | 55 | 외국인기술자 | 80 | 중증환자 |
| 6 | 경로우대자(노인 고령자) | 31 | 법정기부금 | 56 | 우리사주조합(원) | 81 | 지급명세서전자제출 |
| 7 | 경정청구 | 32 | 보험료 | 57 | 원어민 교사 | 82 | 지급명세서제출면제(비과세소득제출면제) |
| 8 | 경조금 | 33 | 분양가액 | 58 | 월세 세액공제 | 83 | 지정기부금 |

### ② Q&A 모음집

☐ Q&A 목차 순서

| 관련내용 | 쪽 | 관련내용 | 쪽 |
|---|---|---|---|
| 1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- 이용방법 등 | 1 | 25. 주택자금공제-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| 14 |
| 2.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- 자료제공동의 | 3 | 26. 주택자금공제-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| 15 |
| 3. 연말정산 방법 | 4 | 27.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| 18 |
| 4. 비과세 - 자기차량운전보조금 | 4 | 28.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| 18 |
| 5. 비과세 - 실비변상적 급여 | 5 | 29.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| 18 |
| 6. 비과세 - 국외근로소득 | 6 | 30.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| 19 |
| 7. 비과세-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등 | 6 | 3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| 20 |

### ③ 계산사례

| 사례 | 매월 식사대로 2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 금액은? |
|---|---|

◇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제공받는 식사대 중 **월 20만 원 이내**의 금액은 **비과세** 적용

### ④ 도움영상

[영상] '국세청'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

## 국세상담센터 누리집

### 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

### ② 연말정산 체크리스트

**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** ('23. 12. 18.부터 운영)

☎(국번없이) 126 ⇨ 5 [ 간소화서비스·세법 상담 ]

| 참고 6 |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|
|---|---|

[ 접근 경로 ]

홈택스(PC) >> 장려금·연말정산>> 편리한 연말정산 >>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

[선행 절차] 공제신고서 작성·예상세액 계산

○ 맞벌이 부부 모두 **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**하여, **간소화자료**를 불러와 **공제신고서**를 작성*한 후 **예상세액 계산하기**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
*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총급여, 연금·건강·고용보험료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 후 입력

□ [Step.01] 자료제공 동의하기

○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**절세안내**를 받을 **배우자**의 **인적사항**(성명, 주민등록번호)을 기재하여 **자료제공**에 **동의**합니다.

-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, 배우자의 세부적인 공제 금액 등 공제신고서 내역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자료제공 동의

□ [Step.02] 절세안내 보기

○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**부양가족**을 **선택**할 수 있는 **모든 사례별** 결정세액 간의 **증감액**을 **확인** 할 수 있습니다.

절세안내 보기

| 참고 7 | 주요 문답자료 (FAQ) |
|---|---|

《 접근경로 》

모든 문답자료(Q&A 모음집)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국세신고안내 → 개인·법인신고안내 →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종합 안내

연말정산 종합 안내

## [ 연말정산 방법 1~2 ]

### 1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?

○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**12월 말 근무지**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,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**주된 근무지**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**합산**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.

-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(주)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*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

### 2 연말정산시 소득·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?

○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·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.

○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(3월 10일)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.

## [ 소득·세액공제 및 감면 3~6 ]

### 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(장인·장모, 시부모 포함)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?

○ 소득[1]·나이 요건[2]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**기본공제**를 **받을 수 있습니다.**

1) 연소득 100만 원(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) 이하　　2) '63.12.31.이전 출생자

- 다만,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4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,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?

○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.

– 다만,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**아래의 순서**에 의해 판단합니다.

1.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
2.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
   ① **직전 과세기간**에 부양가족으로 **인적공제를 받은 사람**
  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   → 해당 과세기간의 **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**

## 5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?

○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, 초·중·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**중복하여 공제**받을 수 있습니다.

* 현금영수증(30% 공제율)수취 시 신용카드(15% 공제율)보다 절세 효과가 큼

| 구 분 | | 특별세액 공제 | 신용카드 소득공제 |
|---|---|---|---|
| 보장성 보험료 | |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| 공제 불가 |
| 의료비 | |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| 공제 가능 |
| 학원비 | 취학전 아동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| 공제 가능 |
| | 그 외 |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| 공제 가능 |
| 교복 구입비 | |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| 공제 가능 |
| 기부금 | |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| 공제 불가 |

## 6 전세(또는 월세)로 거주하다가 2023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,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?

○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'23.12.31. **기준 무주택 세대주***(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)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, '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.

* 국민주택규모(85㎡또는 100㎡)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

## [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7~8]

### 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·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?

○ **성년**(만 19세 이상*)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·세액 공제증명자료는 **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**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* 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

○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며,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.

### 8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?

○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**홈택스(온라인 또는 모바일)에서 확인**이 가능합니다.

> **(P C)** 홈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
>
> **(모바일)** 손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제공동의 현황조회

○ 또한, 근로자 본인은 「제공동의 현황조회」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> **(P C)** 홈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/조회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
>
> **(모바일)** 손택스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제공동의 신청/취소

## [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9~12]

### 9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,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?

○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, 12월말 입·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**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·제외·변경**이 **가능**합니다.

## 10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(동의)한 근로자와 확인(동의)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?

○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(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)에서 **근로자별 확인(동의) 이행 여부도 파악**할 수 있습니다.

○ 확인(동의)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**홈택스 확인**(동의) **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**하여 주기 바랍니다.

○ **2024년 1월 14일까지**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.

## 11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?

○ 삭제한 자료는 **복구**가 **불가능**하며,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**주의**해야 합니다. 다만,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**증빙서류**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, **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**를 통해 **신청**하시면 됩니다.

## 12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?

○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**인별 PDF파일**을 **회사에 제공**하고,

-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**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**하여 제공되며(5GB까지),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.(예 A01, A02, A03, A04, .....)

- 또한, 대용량 간소화자료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**용량이 작은 XML** 파일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